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재 활용 진흥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16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8
3.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정의	9
나. 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다.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5
라.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 및 활용사업지원센터 지정	20
마. 문화재 활용사업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양성	23
바. 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 및 관련 지침 마련	27
사. 대가기준의 고시	30
아. 보칙	3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2.

다.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은 유형,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임.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재 활용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안 제3조).
- 다.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 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아.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함(안 제14조).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필요성

그동안 국가유산 정책은 국가유산의 보호를 강조하고 보존대상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활용 정책 마련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보존만 우선시 되고 개발·활용 등은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되었고,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은 상호 상충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의 공공재적·경제적·지역 공동체적 가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맞추어 국가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국가유산 활용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 자체로도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멋과 향취를 느낄 수 있지만, 국가유산의 내재된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여 국가유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 관광, 산업 분야로의 활용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국가유산 활용은 국가 정책의 영역 만이 아닌 국민의 참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국가유산의 향유권은 국민 스스로 국가

유산을 알고 배우고 느끼는 권리를 누린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국가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이 제고되고, 공동체의 통합을 유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지역 사회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협력하여 보호함으로써 주민들은 정신적 자산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자원으로의 활용 가치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해외의 국가유산 활용 사례를 보면,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¹⁾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유산을 매입·보존·활용하고, 활용사업과 관광사업 등으로 많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미국은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프리저브 아메리카²⁾’ 정책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지가 상승, 역사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친화적 변화 및 낙후된 도시의 재생 효과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유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정책 측면의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1)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43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영국 최대의 시민단체로서, 정부정책의 감시자로서 역할뿐 아니라 정부를 능가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7년 12월 ‘세계내셔널트러스트기구(International National Trusts Organization)’가 발족됨에 따라 전 세계 30여 개국이 활동하는 국제적 자연·문화유산 보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

2) 미국의 ‘프리저브 아메리카’는 역사문화관광, 교육, 문화유산 보존계획을 통해 각 주(State)와 지역도시의 보존사업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입법방안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5.17.)에 따라 ‘국가유산’ 및 유산 유형별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정안의 제명 및 각 유산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용어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 등의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³⁾.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른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마련·적용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6,900만원, 2030년 6억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4억 4,500만원(연평균 6억 8,9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⁴⁾.

3) 다만, 본 검토보고서의 조문별 검토내용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 ‘국가유산’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음.

4)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 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100	—	—	—	—	100	20
지원센터 지정·운영 (안 제9조)	629	629	629	629	629	3,145	629
지침 마련·적용(안 제14조)	40	40	40	40	40	200	40
합 계	769	669	669	669	669	3,445	6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18개 조문과 부칙 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총칙 사항과 문화재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전체적인 법률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9조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조사·연구)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제12조	(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제13조	(문화재 활용산업)
제14조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제15조	(대가기준의 고시)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	(청문)
제1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 칙	(시행일)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제정안은 법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문화재·문화재 활용·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 활용사업자·문화재 활용산업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다.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향유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재 활용사업”이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를 이용하여 체험,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

제정안
로그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재 활용사업자”란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문화재 활용산업”이란 문화재를 매개로 하여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 문화재 활용 진흥을 위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문점을 없애고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2조제5호에서 “문화재 활용산업”을 ‘문화재를 매개로 하여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문화재 관련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구체화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 활용산업의 정의를 제정안 제2조제3호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여 제3호와 관련한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수정의견 참조).

<수 정 의 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u>지정문화유산</u>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u>등록문화유산</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국가유산”이란 ----- -----. 가. ----- ----- <u>지정문화유산</u> 나.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u>국가무형유산</u>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u>시·도무형유산</u>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u>천연기념물</u> 등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등록문화유산</u>

<u>나.</u>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잠정 목록에 등재된 유산 <u>다.</u>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향유함으로써 <u>문화재의</u>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재 활용사업”이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향유하기 위해 <u>문화재를</u> 이용하여 체험,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재 활용사업자”란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문화재 활용산업”이란 문화재를 매개로 하여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u>만·바.</u> (제정안 나목 및 다목과 같음) 2. “국가유산 활용”이란 국가유산이 ----- ----- <u>국가유산의</u> ----- -----. 3. “국가유산 활용사업”이란 국가유산의 ----- ----- <u>국가유산을</u> ----- -----. 4. “국가유산 활용사업자”란 국가유산 ----- -----. 5. “국가유산 활용산업”이란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여 제3호와 관련된 ----- -----.
---	---

나. 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5조)

제정안은 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 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 활용은 모든 국민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③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인류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국가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 및 지원 등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3조는 문화재 활용의 기본원칙을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상호 조화, 국민의 문화재 의미와 가치에 대한 향유와 지속 가능한 이용,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및 인류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활용 진흥에 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활용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의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없거나 보장되지 못하면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지속될 수 없고 자생력을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제정안에 포함되어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5조는 다른 법률에 문화재 활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충돌을 피하고 법령 상호간에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7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활용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활용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

제정안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재 활용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에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문화재 활용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 계획,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유산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 활용 정책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제1항은¹⁾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1)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문화유산기본계획이 아닌 국가유산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봄(수정의견 참조).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기본계획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보호계획에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기본계획에서 각각의 유산별 활용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5.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협력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안 제7조는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수 정 의 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u>문화재 활용사업</u> 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제6조에 따른 <u>문화유산 기본계획</u> 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국가유산 활용사업</u> - ----- ----- <u>국가유산 활용사업 기본계획</u> ----- ----- ----- 「 <u>국가유산기본법</u> 」 제8조에 따른 <u>국가유산기본계획</u>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u>문화재</u> 활용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1. <u>국가유산</u> ----- -----
2. (생략)	2. (제정안과 같음)
3. <u>문화재</u> 활용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u>국가유산</u> ----- -----
4. <u>문화재</u> 활용사업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u>국가유산</u> ----- -----
5. <u>문화재</u> 활용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u>국가유산</u> ----- ---
6. 그 밖에 <u>문화재</u>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 <u>국가유산</u> ----- -----
③·④ (생략)	③·④ (제정안과 같음)

라.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 및 활용사업지원센터 지정(안 제8·9조)

제정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물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2.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국내외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문화재 관람 및 안내·편의시설 등의 환경 개선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업 6. 제9조에 따른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정안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2.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 및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4. 지역주민과 문화재 활용사업자 등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 역량 강화
5. 지역별 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는 문화재 활용사업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활용사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국내외 문화재 활용사업 조사·연구·개발, 문화재 관람동선·편의 및 안내 시설

등 환경개선, 활용사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유산 활용 수준을 높이고 현장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전담기관이 현장 중심의 활용 지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집행 체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안 제9조는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이 중심이 되고 민간이 주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마. 문화재 활용사업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안 제10·11조)

제정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와 자료 제출 요청, 업무 위탁 규정 및 문화재 활용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외 문화재 활용사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가치 및 파급 효과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재 관람환경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문화재 활용산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정안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재 활용사업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 활용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안 제10조에서 문화재 활용사업 조사·연구 실시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대상과 관련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안 제8조) 및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안 제9조)가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점, 문화재 활용사업조사·연구 실시 사항에 문화재 활용사업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점 및 제정안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를 직접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과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수정의견 참조).

안 제11조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유산 활용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유산청장은 <u>문화재</u> 활용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 -- <u>국가유산</u> ----- ----- ----- ---
1. 국내·외 <u>문화재</u> 활용사업 실태에 관한 사항	1. ----- <u>국가유산</u> ----- -----
2. <u>문화재</u> 활용사업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가치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2. <u>국가유산</u> ----- ----- -----
3. 국내·외 <u>문화재</u> 관람환경에 관한 사항	3. ----- <u>국가유산</u> ----- -----
4. 국내·외 <u>문화재</u> 활용산업에 관한 사항	4. ----- <u>국가유산</u> ----- -----
5. (생략)	5. (제정안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u>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② ----- ----- ----- <u>지방자치단체의</u> <u>장, 전담기관, 지원센터, 「문화유</u>

<u>한 법률」 제34조</u>에 따른 관리단체, <u>문화재</u>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u>문화재</u> 활용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u>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유산 -----.</u> ③ ----- ----- 국가유산 ----- -----. ④ (제정안과 같음)
--	--

**바. 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 및
관련 지침 마련 (안 제12조~제14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및 문화재 활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재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인력의 교육 및 연수 2.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4.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재 활용산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를 매개로 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제작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정책 연구

제정안
3. 그 밖에 문화재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지침이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평가 및 개선 등 관리·감독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 기회 확대, 지역 관광 연계산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3조는 문화재를 매개로 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제작과 이에 필요한 기술 및 정책 연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사업의 추진 등 문화재 활용산업 활성화 노력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이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 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는 문화재 활용 현장과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과 조화를 이루며 문화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정지도적 성격의 활용사업 지침을 만들고 관리·감독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자가 관련 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 대가기준의 고시(안 제15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재 활용사업 계약과 관련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5조(대가기준의 고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에 따른 문화재 활용사업 계약의 대가기준을 통해 국가유산 활용사업 기획 담당자, 수행단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고품질 활용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자생적 발전 기반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아. 보칙(안 제16조~제18조)

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칙으로 권한의 위임·위탁, 청문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조사·연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안 제16조는 제정안에서 정한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7조의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의견개진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

차로서, 위법한 행정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바,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제8조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한 청문 실시 사항을 보칙에 해당하는 제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법률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보칙 장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이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쉬운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에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근거조항에 함께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 참조).

안 제18조는 형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및 알선수뢰 규정을 적용할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어, 업무를 수탁한 기관·단체의 담당자가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u>문화재</u>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u>청문</u>) (생 략) 제18조(<u>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u>) (생 략)	제8조(<u>국가유산</u>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정안 제⑤항과 같음) <삭 제> 제17조(<u>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u>)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문 의 처

02)6788-5384

국가명	내 용																																				
영국	[출처: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국가유산청, 2017)]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유산을 매입, 보존, 활용하고, 활용사업과 관광사업 등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 영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로 성장함 .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의 유산을 보존·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져, 내부 직원의 규모와 급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 <table><tr><th>연도 항목</th><th>2009</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r><tr><td>직원(명)</td><td>4,938</td><td>4,964</td><td>5,006</td><td>5,285</td><td>5,427</td><td>5,572</td><td>5,899</td><td>6,211</td></tr><tr><td>고액연봉자(명)</td><td>66</td><td>77</td><td>67</td><td>71</td><td>88</td><td>80</td><td>88</td><td>93</td></tr><tr><td>근로만족도%</td><td>-</td><td>46</td><td>51</td><td>55</td><td>55</td><td>58</td><td>59</td><td>61</td></tr></table> * 고액연봉은 6만 유로 이상 / 근로만족도 점수는 ‘매우 동의함’ 응답 비율	연도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원(명)	4,938	4,964	5,006	5,285	5,427	5,572	5,899	6,211	고액연봉자(명)	66	77	67	71	88	80	88	93	근로만족도%	-	46	51	55	55	58	59	61
연도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원(명)	4,938	4,964	5,006	5,285	5,427	5,572	5,899	6,211																													
고액연봉자(명)	66	77	67	71	88	80	88	93																													
근로만족도%	-	46	51	55	55	58	59	61																													
미국	[출처: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국가유산청, 2017)] • 미국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에서의 산업적 효과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비용투입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미국 조지아 주 사례) <table><tr><th>산업</th><th>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th></tr><tr><td>자동차 제조업</td><td>3.5</td></tr><tr><td>컴퓨터 제조업</td><td>4</td></tr><tr><td>항공교통산업</td><td>8.7</td></tr><tr><td>육류가공산업</td><td>10.4</td></tr><tr><td>건축산업(신축)</td><td>14.9</td></tr><tr><td>문화유산 활용과 보존</td><td>18.1</td></tr></table> <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 활용정책의 조지아 주 사례, 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	산업	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자동차 제조업	3.5	컴퓨터 제조업	4	항공교통산업	8.7	육류가공산업	10.4	건축산업(신축)	14.9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18.1																						
산업	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자동차 제조업	3.5																																				
컴퓨터 제조업	4																																				
항공교통산업	8.7																																				
육류가공산업	10.4																																				
건축산업(신축)	14.9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18.1																																				

- 특히 미국과 같이 적극적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보존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문화유산 인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 역사문화관광수익 증대, 문화유산으로 인해 낙후된 도시의 재생이라는 환경적 정비효과, 지역 인프라 증대 등의 효과를 경험함. 이는 우리나라의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서 실시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에도 나타남.

효과 국가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객, 수익 증대	도시재생과 환경정비, 지역인프라 증대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 지역에서는 문화유산인근 주택이 2000년~07년 사이에 21% 성장. (관련사업의 사업비 150,000달러)	조지아 주의 문화유산관광으로 117,000개의 일자리와 2억 달러 이상의 급여와 임금이 창출. (조지아주 총사업비 624,747달러)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는 100여개의 빈 건물들이 호텔, 사무실, 주거시설, 소매시설, 콘도 등으로 재개발. (관련사업의 사업비 126,235달러)
한국 (경주)	2015년 월세 100만원이었던 곳이 2017년 월세 400~500만원 호가	수십년간 죽어있던 동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다. 2016년부터 20~30대 고객 유입	황리단길 자연 조성, 거리경관정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외벽 정비, 간판정비 등

< 미국과 한국(경주)의 문화유산 활용 등의 효과 비교 >

5.2

추진 전략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다같이 행복한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제공
-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자원 가치 창출 실현
-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유산 교육 확대

5.2.1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다양화·브랜드화	• 세계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유산 • 공·농 문화재를 활용한 고품격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문화유산의 특색 있는 활용 사업
		친절하고 편리한 문화유산 향유 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관람 환경 고도화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향유 환경 조성 • 문화유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디지털 시대를 여는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의 만남 • 디지털 기술로 재조명 되는 문화유산 • 새로운 형태의 문화유산 향유 콘텐츠 보급
5.2.2	문화유산 자원화를 통한 가치 창출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자원 발굴	•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 지역 특색의 이야기 자원 발굴 및 활용 • 문화유산을 통한 도심 속 매력적 공간 조성
		지역 재생 및 발전의 동력으로서 문화유산	•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 • 무형유산 지역 특화 활용 거점 조성
		문화유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 조성	• 문화유산 산업의 자립화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구축 • 문화재형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5.2.3	친근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공감 확산	문화유산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문화재교육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 문화유산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체계 확립 •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문화·기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 문화재 교육을 통한 소통 및 가치 확산 • 안전한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교육 확대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문화유산 교육	• 문화재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 전국민 대상의 문화재 교육 확장 • 문화재 현장 공개 확대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22년)

** 사회 환경변화 및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2022~2026) 문화재 정책 추진

□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로 2022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100	-	-	-	-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운영(안 제9조)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 각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매년 6억 2,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은 문화재청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센터별 3,700만원으로 가정함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킴이 중간지원 거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매년 센터별로 각각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17개소 × 3,700만원 = 62,900만원

[표]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센터 지정·운영 (안 제9조)	629	629	629	629	629	3,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마련·적용(안 제14조)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발간 및 배부 비용으로 매년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 지침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지침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 발간 및 배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지침 발간 및 배부 비용은 국가유산청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 －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돌봄사업 지침 및 매뉴얼 발간사업” 예산으로 2023년에 4,100만원, 2024년에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지침 마련·적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침 마련·적용(안 제14조)	40	40	40	40	4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